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6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김형동 · 강승규 · 나경원
김선교 · 박정훈 · 김태호
김미애 · 조배숙 · 신동욱
정희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강,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(兩岸)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 · 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수변 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 · 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,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 ·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

고려하여 별도로 지정·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4조제1항제2호의”를 “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·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·고시하는 권역 또는 제4조제1항제2호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) ① (생략)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<u>제4조제1항제2호의</u>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.	제5조(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대책지역</u> 으로서 그 하천·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·고시하는 권역 또는 <u>제4조제1항제2호의</u>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 ③·④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